

July 21, 2023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부체계 검토 및 개선 필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7.20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방안을 통해 AML 관련 이사회, 대표이사 및 보고책임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화하여, 경영진의 제재리스크를 저감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등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부체계 변화가 예상됩니다.

I. 요지 및 시사점

구분		현행	개선	시사점
역할 책임 정비	이사회	감독대상 불분명	감독대상 명확화	이사회 AML 책임 경감 - 이사회 업무는 AML 보고체계의 구축·운영 실태 보고요구, 개선지시, 조치결과 검토·승인으로 제한하여, 감독당국의 검사 리스크 감소 독립적감사 중요성 증대 - 이사회 독립적 감사 결과 검토, 승인, 개선지시 권한 인정
		감독업무 내용 불분명	감독업무 내용 구체화	
	대표이사	보고체계 구축·운영 관련 업무범위 불분명	(구축)업무지침(안) 이사회 상정 및 업무조직 구성 (운영)취약점 개선·보고	대표이사 AML 책임 경감 - 대표이사 업무는 업무지침 작성과 담당직원 임명으로 제한하고, 내규준수 관리의무 없어짐 - 준법감시인의 하위직급으로 보고책임자 임명시 대표이사의 감독책임 없음
		내부통제정책 준수책임의 내용·범위 불분명	(준수)준법감시인이 업무지침 준수여부를 감독	
		감독책임 범위 미규정	(감독)준법감시인을 감독	
	보고책임자	STR·CTR 책임범위 불분명	본점차원STR·CTR위반 행위 책임 (지점차원 위반에 대한 감독 책임)	보고책임자 AML 책임 경감 - 지점의 STR, CTR 위반시 본점 보고책임자는 행위자 책임 면제, 감독자 책임은 행위자보다 1단계 경감 - 지점 CDD 위반시 본점 보고책임자 책임 소멸 - 보고책임자 책임 경감되어 준법감시인과 대표이사 징계리스크 경감
		CDD 책임범위 불분명	지점차원 CDD 감독(지점제외)	
보고 책임자 취약점 보완	전문성	전문성·독립성 관련 선언적 규정만 존재	AML 업무경력 2년 이상	보고책임자의 준법감시인 겸직 불요 - 은행 이외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차하위 직위자를 보고책임자로 임명 가능, 대표이사 감독책임 리스크 소멸
	독립성		보고책임자 직위 명문화	

II. 향후 일정 및 필요사항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 중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을 개정해 고시하고, 금융회사등의 내규 개정 · 관련 조직 정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고시 6개월 후인 '24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안으로 금융회사의 AML 관련 업무체계에 유리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미리 준비하여 신속한 관련 내규 개정 및 이행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련 구성원

윤주호

변호사

T 02.3404.6542

E juho.yoon@bkl.co.kr

김지이나

변호사

T 02.3404.0698

E jeena.kim@bkl.co.kr